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7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 송갑석·인재근·서삼석

조정식 · 조오섭 · 이장섭

이규민 · 민형배 · 안민석

권칠승·정춘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은 품질 관리, 국가기관 제출 등을 이유로 구두, 전화,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'을'인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음. 이로 인해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'갑'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'을'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

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(안 제25조제2항, 제27조제1항 및 제5항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전단 중 "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"를 "관하여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"을 "규정,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"을 "제23조,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술자료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준수사항) ① (생 략)	제25조(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	②
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	
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,	
비밀유지에 관한 사항, 권리귀	
속 관계 및 대가 등에 <u>관한 사</u>	<u>관하여</u>
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	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
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	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
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	
야 한다. 이 경우 위탁기업은	
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	
원(權原) 없이 자기 또는 제3자	
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	
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	제27조(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
거래행위 개선) ① 중소벤처기	거래행위 개선) ①
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	
간의 수탁·위탁거래 과정에서	
위탁기업이 제21조, 제22조, 제	
22조의2, 제23조의 <u>규정 또는</u>	<u>규정, 제25조제1항 또는</u>
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	제2항을

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 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 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|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 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5	
제23조, 제25조제1항 또	
는 제2항을	